

대구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207763 판결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김용민

피 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광현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28,178,000원, 공사기간 2017. 9. 5.부터 2018. 7. 2.까지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후 위 도급계약은 3차례 변경되어 2018. 12. 18.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4,736,732,000원, 공사기간 2017. 9. 5.부터 2019. 1. 12.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원고와 C 사이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8. 1. 25. 원고에게 선금금 1,100,000,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 선금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① 2018. 3. 29. 선금금 1,1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서(보증금액 1,122,302,000원, 보증기간 2018. 2. 13.부터 2019. 3. 13.까지)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② 같은 날 위 선금금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액을 21,633,000원 추가하는 보증계약을 체결(최초 보증계약과 추가 보증계약을 합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계약자(채무자)는 C, 상대방(보증채권자)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보증책임)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한 선금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선금을 임의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때

라. 이후 원고는 2018. 2. 14. C에 선금금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2. 19. 하수급업체인 E 주식회사에 70,000,000원, 주식회사 F(현 주식회사 G)에 200,000,000원, 주식회사 H에

200,000,000원, I 주식회사에 3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70,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C의 채권자들이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자 원고는 C에 대하여 원고에게 송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결하지 못하고, 급기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9. 2. 13.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C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선급보증금 1,143,395,000원(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1,122,302,000원 + 추가 보증금액 21,633,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지급 청구한 선급금 원금 1,100,000,000원 중 하수급업체에 지급된 500,000,000원은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의로 지급된 것이므로 선급금보증 약관 제2조에 따라 보증책임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선급금 보증책임 인정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후, 2019. 5.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선급금보증금 155,205,708원(= 원금 148,441,028원 + 약정이자 6,764,6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 선급금보증책임 인정금액 산출내역

주) 약정이자율: 연 3.68%(선금지급시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 기준)

(단위: 원)			
선급금액(A)	타절기성금액(B)	반환할 선급금(A-B) (보증책임 인정금액)	비 고
600,000,000	451,558,972	148,441,028	약정이자 별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선금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고, 그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선금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선금을 임의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때’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선금금 11억 원 중 6억 원은 C에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합계 5억 원은 C의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여 임의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제2조 제6호 따라 피고는 위 5억 원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선금금 중 5억 원을 임의로 제3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지급한 위 5억 원은 임의로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무자는 C이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하수급업체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과 관련한 C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일정한 경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이 제출한 선금금 신청에서는 이 사건 하수급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따르지 아니한 선금금 지급을 가지고 C에게 모두 선금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C의 승낙하에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된 것으로서 C에 직접 지급된 것과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하수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선급금을 둔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어 보이거나 이러한 점은 공사의 원활이라는 측면에 더 부합하는 것일 뿐이고,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로서는 채무자인 C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일 뿐이고, 추가로 하수급업체가 부담할 선급금 채무에 대하여까지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 제6조 제3항은 도급인이 하수급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먼저 선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도급인이 선금을 반환받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여기서는 C)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위 지침 제3조 제5, 6항).

위 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의 내용과 피고도 위 지침을 알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침에 따라 하수급업체에게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면 ‘선금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지침에 어긋나게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면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지침에 따라 선급금 5억 원을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선급금을 임의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홍승희, 판사 한대광